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검토보고서·····40면
○ 심사 결과 보고서·····49면
○ 제안 설명서·····52면
○ 검토 보고서·····60면
○ 공무국외출장보고서·····72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12. 13.(금)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발의 및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1.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구교강의원외6인】
2.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3.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4.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5.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4년 11월 일
발 의 자 : 구교강, 이화숙,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제안이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예정 국가를 현지 방문하여 도시별 인력 공급 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자 이탈문제 등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고자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 장 지 : 베트남, 캄보디아

나. 출장목적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정보 수집 및 문제점 대책 수립

다. 출장기간 : 2024. 11. 3. ~ 11. 10.(6박 8일)

라. 출 장 자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의원

마. 출장성과

-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지 정책 자료 수집
- 근로자 이탈 문제 등 방안 모색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제10조

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별첨)

참고사항 **관련근거**

▣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 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자 귀책으로 인하여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내 유료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의 그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운영자 귀책으로 인하여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내 유료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의 그 반환 기준 명시(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입법예고 : 2024. 9. 13. ~ 10. 4.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기획예산실-12676(2024.9.4.)]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43346(2024.9.10.)]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때의 이용료 반환은「소비자분쟁 해결기준」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제2항 중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임대하여 운영하게”를 “사용허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이용료의 환불) (생 략)	제11조(이용료의 환불)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때의 이용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편의시설 등) ① (생 략)	제16조(편의시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사용허가 ----------.

□ 관계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4. 작성자

관광과 관광시설관리팀장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야영장 군민우선 예약제를 시행하여 성주군민에게 여가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시설물 개선에 따른 이용료 변경 등 현행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자 선정 및 관리운영(안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위·수탁 계약 및 수탁자의 운영규정 범위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제14조, 제15조, 제16조 삭제

나. 시설물 개선에 따른 이용료 변경(안 제4조, 별표 1)

· 개선공사를 통하여 오토 사이트로 변경된 시설물에 대하여 요금조정

· 시설물 이용에 대한 입장료를 삭제하고 사용료는 이용료로 통일

다. 군민우선예약 등 예약 관련 사항(안 제5조)

라. 이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반환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2025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다. 입법예고 : 2024. 9. 13. ~ 10. 4.

라. 규제심사 : 규제 대상 아님[기획예산실-12676(2024. 9. 4.)]

마.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대상 아님[가족지원과-42975(2024. 9. 6.)]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여가선용(餘暇善用)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성주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장"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규정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을 말한다. <개정 2018. 11. 8.>
2. "야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지(야영공간), 운동시설, 편의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성수기”란 7, 8월 및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야영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

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이용료) ① 야영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야영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예약) ① 이용자는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예약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도 예약이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③ 관리자는 예약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보통신망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 성주군민은 이용예정일 기준으로 시설의 100분의 30범위 안에 한하여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고, 성주군민이 아닌 자는 그 다음 날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 시작 시간 등 예약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정보통신망에 공지한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이용자는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나.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다.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이용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한 면만 적용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사. 성주군교육장,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 활동을 하는 경우

3.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한 면만 적용한다.

나. 「성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용일 현재 주소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둔 사람. 다만, 비수기 한 면만 적용한다.

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야영장 입장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방법) ① 이용료는 야영장 시설 이용권(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이용 전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방문 또는 현장에서 징수한 이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입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등)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으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2. 야영장 이용 전 신청인이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이용료의 반환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료를 반환한 경우에는 이용료 반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야영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약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이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야영장 시설에 대한 이용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별표 3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 수목,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실비로 손해배상 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리 위탁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장비, 시설,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야영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야영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야영장 시설이용료(제4조 관련)

(1일 기준,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규격	이용기준	기준인원·차량	이용료		비고
					성수기	비수기	
금수강산문화 공원야영장	오토캠핑장	6m x 7m	1면/1일	5인/1대	25,000	20,000	
		8m x 9m	1면/1일	5인/1대	30,000	25,000	
		8m x 10m	1면/1일	5인/1대	30,000	25,000	
		10m x 10m	1면/1일	5인/1대	35,000	30,000	
	캠핑사이트	6m x 7m	1면/1일	5인/1대	20,000	15,000	
		8m x 10m	1면/1일	5인/1대	25,000	20,000	
가야산 오토 캠핑장	오토캠핑장	8m x 8m	1면/1일	5인/1대	35,000	30,000	
		7m x 7m	1면/1일	5인/1대	30,000	25,000	
		6m x 6m					
	테크사이트	6m x 6m	1면/1일	5인/1대	35,000	30,000	오토
					30,000	25,000	일반
	물놀이장	930㎡	시설이용자		무료	미운영	

비고

1. 이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로 한다.
2.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하며,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일 이용료의 20%
 -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일 이용료의 40%
 - 4시간 이후: 1일 이용료의 100%
3. 기준인원 및 차량을 초과한 경우 한 면당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단, 초과인원은 한 면당 2명 이내로 한다.
 - 당 일 : 5,000원
 - 1박 2일 : 10,000원
 - 2박 3일 : 15,000원
4. 성수기란 7, 8월 및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5. 물놀이장은 7월~8월 운영하되 날씨 등 운영여건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시설이용료 반환(제8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비고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 반환	
	이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90% 반환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70% 반환	
	이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50% 반환	
	이용예정일 14:00 이전 취소	선납금액 20% 반환	
	이용예정일 14:00 이후 취소	환급 없음	
예약 · 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할 수 없거나 야영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 없이 전액 반환		

〔별표 3]

이용자 준수사항(제11조 관련)

이곳 야영장에서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이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용료
 ○ 이용료는 이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이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잔디밭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정숙 시간은 22: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내에서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캠프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 캠프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 · 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시설이용권(제7조 관련)

No. 20 - 000001	No. 20 - 000001
야영장 시설이용권(원부)	**야영장 시설이용권(이용자보관용)**
· 이 용 료 : ₩ (금 원정) · 이용시설 : · 이용기간 : ~ · 이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야영장	· 이 용 료 : ₩ (금 원정) · 이용시설 : · 이용기간 : ~ · 이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야영장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별표Ⅱ 품목별분쟁해결기준 숙박업 (3 - 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o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o 위약금 50% 감경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4. 작성자

관광과 관광시설관리팀장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4.11.23 시행 예정)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성주군 조례에 건강진단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신설(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기획예산실-29569(2024.8.29.)]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사항 없음 [가족지원과-29566(2024.8.29.)]

마. 입법예고 : 2024. 9. 13.~ 10. 04.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제 증 명 발 급 수 수 료(제4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1. 일반진단서	1통당	500원	검사 및 진단비 별도
2. 특별진단서	〃	2,000원	요양진단서, 병사용 상해진단용, 검사 및 진단비 별도
3. 사체검사서 및 감정서	〃	5,000원	
4. 근로자 건강진단서	〃	500원	검사 및 진단비 별도
5. 사망진단서	〃	500원	검사 및 진단비 별도
6. 채용신체검사서	〃	500원	공무원채용신체 검사서는 제외
7.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	300원	
8. 각종 증명서1통 초과 발급	〃	100원	
9. 외국인 결핵검진 확인서	〃	300원	
10. 건강진단결과서	〃	3,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강진단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 ①·② (생 략)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건강진단결과서)등 관계법령에 수수료가 규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건강진단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 관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한다. <개정 2023. 11. 22. / 시행 2024. 11.23.>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4. 작성자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부적격 장소에 설치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건강한 여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및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6조)

나. 야외운동기구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7~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국민체육진흥법」, 「국가배상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지원과-46064(2024. 9. 30.)]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909(2024. 10. 14.)]

마. 입법예고 : 2024. 10. 17. ~ 11. 6.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설치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다만,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서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성주군 관내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설치장소) ① 운동기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설치부서가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등 개별법에 따라 이용 및 개발이 제한되는 장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기존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되, 현지조사 및 검토 후 운동기구를 설치한다.

②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보수 및 유지 위주로 관리한다.

③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바닥 및 기구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설치한다.

④ 운동기구의 흔들림이나 빠짐이 없도록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는 관리주체로서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에 입력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 작성) 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리카드를 신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는 이용자가 설치 완료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별표]

안 내 표 시 문 (제9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 사용 전 반드시 운동기구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이용제한 : 어린이, 노약자, 환자 - 과도한 운동은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별지 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제10조 관련)

구 분	관리번호	책임부서	실과소 읍 면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
야외운동기구		설치부서				
		관리부서				

시 설 명			
위 치			
수 량		설치년도	
총사업비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비 고			

위 치 도	사 진 대 지

(뒷면)

	점검일자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성명	서명	
점검현황				

□ 관계법령

체육시설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 · 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 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 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4.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12. 13.(금)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자 귀책으로 인하여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내 유료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의 그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자 귀책으로 인하여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내 유료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의 그 반환 기준 명시(안 제11조제2항)

3.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입법예고 : 2024. 9. 13. ~ 10. 4.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기획예산실-12676(2024.9.4.)]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43346(2024.9.10.)]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운영자 귀책으로 인하여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내 유료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야영장 군민우선 예약제를 시행하여 성주군민에게 여가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시설물 개선에 따른 이용료 변경 등 현행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자 선정 및 관리운영(안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위·수탁 계약 및 수탁자의 운영규정 범위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제14조, 제15조, 제16조 삭제

나. 시설물 개선에 따른 이용료 변경(안 제4조, 별표 1)

· 개선공사를 통하여 오토 사이트로 변경된 시설물에 대하여 요금조정

· 시설물 이용에 대한 입장료를 삭제하고 사용료는 이용료로 통일

다. 군민 우선예약 등 예약 관련 사항(안 제5조)

라. 이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반환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3.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2025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다. 입법예고 : 2024. 9. 13. ~ 10. 4.

라. 규제심사 : 규제 대상 아님[기획예산실-12676(2024. 9. 4.)]

마.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대상 아님[가족지원과-42975(2024. 9. 6.)]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의견

○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시설물 개선에 따라 이용료 변경 등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성주군민들의 여가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주군 야영장 군민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수탁자 선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여가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4.11.23 시행 예정)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성주군 조례에 건강진단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신설(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기획예산실-29569(2024.8.29.)]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사항 없음 [가족지원과-29566(2024.8.29.)]

마. 입법예고 : 2024. 9. 13.~ 10. 04.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24´ 11. 2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의 발급 수수료 금액을 3,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부적격 장소에 설치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건강한 여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및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6조)

나. 야외운동기구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7~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국민체육진흥법」, 「국가배상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지원과-46064(2024. 9. 30.)]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909(2024. 10. 14.)]

마. 입법예고 : 2024. 10. 17. ~ 11. 6.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을 고려한 신규 설치장소 기준과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초와 바닥재 설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이용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건강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12. 13.(금) 10:30
제286회 성주군의회(2차 정례회)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 결과 보고서

성 주 군 의 회

심 사 결 과 보 고 서

1. 심사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심사경과

1) 제 출 일 및 제 출 자 : 2024. 12. 2. 성주군수

2) 위 원 회 회 부 일 : 2024. 12. 6.

3) 상정일 및 심사기간 : 2024. 12. 9. ~ 12. 13. (4일간)

3. 제안 설명의 요지 : 생략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일괄 제안 설명자 기획예산실장 백대흠(별첨 1 제안 설명서 참조)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생략

1) 전문위원 황영미 (별첨 2 검토 보고서 참조)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자와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별첨 3 수정조서 참조)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1)

2024. 12. 9.(월) 10:30
의회 소회의장(4층)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 안 설 명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존경하는 구교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 총 19억 3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일반회계 7억원
- 특별회계 12억 9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 기 금 5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7억원)은**

◇ 지방세수입 1억 1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세외수입 3억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지방교부세는

- 보통교부세 77억 1천 3백만원 감액하고,
-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정교부금은

- 일반조정교부금 2억 5천만원과
- 특별조정교부금 6억 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 국·도비 보조금 24억 9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7억원)은**

◇ 국·도비 보조사업 12억 4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특별교부세 사업 1억원

[특별교부세 세입 13억원, 재원(군비)대체 12억원]

◇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세입 6.5억원, 군비매칭비 3.5억원]

◇ 국·도비 반환금 33억 9천 6백만원

◇ 경상경비 등 자체사업 1억 5천 1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41억 2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5억원
- 기초연금 지원 29억 7천 2백만원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억원
- 전기자동차 보급 5억 8천 4백만원
- 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 2천 4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억 7천 8백만원
-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3억 9천만원
-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공사비
[수륜보건지소, 도흥보건진료소] 5억 1천 9백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 도시재생(2단계) 군비추가분 10억원
- 동락 재해위험지구 정비 2억 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 방범용 CCTV 설치 1억원

[추경예산 성립 전(수륜, 금수강산, 초전), 특별교부세(1억원)]

- 예산천(삼산2리) 정비공사 4억원

[**기정** 군비(4억원) → **경정** 특별교부세(3억원), 군비(1억원)]

- 낙동강변 성주파크골프장 조성사업 9억원을

[**기정** 특별조정교부금(4억원), 군비(20억원) →
경정 특별교부세(9억원) / 특별조정교부금(4억원) 군비(11억원)]

재원대체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는

- 선남 오도~문방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

[**기정** 군비(3억원) → **경정** 특별조정교부금(3.5억원), 군비(3.5억원)]

- 용암 본리도로 인도설치사업 4억원

[특별조정교부금(2억원), 군비(2억원)]

- 용암 죽전 마을회관 신축공사 2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1억원), 군비(1억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국·도비 반환금(국 2,935 / 도 458 / 기타 3)으로는

-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10억원 등 460건, 33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경상경비 등 자체사업으로는

-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5억 8천 5백만원

-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8천 6백만원

- 기타 사업비 증감으로 인해
1억 5천 1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 일반예비비 25억 1천 5백만원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 3천 7백만원

- 내부유보금 전액인 10억 5천만원 등
총 41억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규모는 총 12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편성 내역은**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천 7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1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 수질개선 특별회계 2억 4천 9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천만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억 9천 9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증 56백만원)은

◇ 옥외광고 발전기금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성주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천 9백만원을
증액(예치금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미 이행,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이월하고자 합니다.

◇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 일반회계 91건, 662억 5천 5백만원
- 특별회계 4건, 9억 7천 6백만원 등
총 95건에 673억원 입니다.

◇ 명시이월 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세입 반영 등

올해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사업비를 최종 정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12. 9.(월) 10:30
제286회 성주군의회(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예산규모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예산안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39,800,000	100.00%	641,790,000	100.00%	△1,990,000	△0.31%
일반회계		599,100,000	93.64%	599,800,000	93.46%	△700,000	△0.12%
특별회계		40,700,000	6.36%	41,990,000	6.54%	△1,290,000	△3.07%
회계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789,000	0.12%	772,000	0.12%	17,000	2.2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7,160,000	1.12%	7,409,000	1.15%	△249,000	△3.3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8,000	0.01%	47,000	0.01%	1,000	2.13%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463,000	0.23%	1,463,000	0.23%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0	0.00%	60,000	0.01%	△60,000	순감
	치수사업특별회계	360,000	0.06%	360,000	0.06%	0	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80,000	0.92%	5,880,000	0.92%	0	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000,000	3.91%	25,999,000	4.05%	△999,000	△3.84%

나. 일반회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99,100,000	100.00%	599,800,000	100.00%	△700,000	△0.12%
세입예산	지방세수입	46,472,257	7.76%	46,355,449	7.73%	116,808	0.25%
	세외수입	21,020,742	3.51%	21,326,336	3.56%	△305,594	△1.43%
	지방교부세	248,245,000	41.44%	254,658,000	42.46%	△6,413,000	△2.52%
	조정교부금등	16,453,372	2.75%	15,552,981	2.59%	900,391	5.79%
	보조금	204,245,910	34.09%	206,744,515	34.47%	△2,498,605	△1.2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662,719	10.46%	55,162,719	9.20%	7,500,000	13.60%
총 계		599,100,000	100.00 %	599,800,000	100.00 %	△700,000	△0.12 %
세출예산	일반공공행정	22,968,375	3.83 %	21,575,928	3.60 %	1,392,447	6.45 %
	공공질서및안전	25,932,880	4.33 %	25,733,930	4.29 %	198,950	0.77 %
	교육	4,045,569	0.68 %	4,045,569	0.67 %	0	0.00 %
	문화및관광	60,772,017	10.14 %	60,037,686	10.01 %	734,331	1.22 %
	환경	55,764,392	9.31 %	56,239,603	9.38 %	△475,211	△0.84 %
	사회복지	107,230,900	17.90 %	110,625,054	18.44 %	△3,394,154	△3.07 %
	보건	8,537,265	1.43 %	8,002,515	1.33 %	534,750	6.68 %
	농림해양수산	98,383,881	16.42 %	97,614,605	16.27 %	769,276	0.79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556,392	1.93 %	11,320,008	1.89 %	236,384	2.09 %
	교통및물류	24,220,981	4.04 %	23,629,086	3.94 %	591,895	2.50 %
	국토및지역개발	106,633,402	17.80 %	104,893,433	17.49 %	1,739,969	1.66 %
	예비비	2,769,005	0.46 %	6,871,144	1.15 %	△4,102,139	△59.70 %
	기타	70,284,941	11.73 %	69,211,439	11.54 %	1,073,502	1.55 %

다. 특별회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0,700,000	100.00%	41,990,000	100.00%	△1,290,000	△3.07%
세입예산	세외수입	4,714,775	11.58%	4,695,489	11.18%	19,286	0.41%
	보조금	24,177,645	59.40%	25,498,652	60.73%	△1,321,007	△5.1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807,580	29.01%	11,795,859	28.09%	11,721	0.10%
총 계		40,700,000	100.00 %	41,990,000	100.00 %	△1,290,000	△3.07 %
세출예산	환경	37,895,000	93.11 %	39,143,000	93.22 %	△1,248,000	△3.19 %
	사회복지	789,000	1.94 %	772,000	1.84 %	17,000	2.20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8,000	0.12 %	47,000	0.11 %	1,000	2.13 %
	국토및지역개발	1,772,925	4.36 %	1,832,925	4.37 %	△60,000	△3.27 %
	기타	195,075	0.48 %	195,075	0.46 %	0	0.00 %

라.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일반+특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39,800,000**	**100.00 %**	**641,790,000**	**100.00 %**	**△1,990,000**	**△0.31 %**
본 청	**513,638,455**	**80.28 %**	**515,319,213**	**80.29 %**	**△1,680,758**	**△0.33 %**
기획예산실	6,966,996	1.09 %	10,075,676	1.57 %	△3,108,680	△30.85 %
자치행정과	26,174,002	4.09 %	26,174,502	4.08 %	△500	△0.00 %
재무과	37,385,382	5.84 %	37,382,395	5.82 %	2,987	0.01 %
미래전략과	17,199,735	2.69 %	17,308,035	2.70 %	△108,300	△0.63 %
민원과	3,923,128	0.61 %	3,923,128	0.61 %	0	0.00 %
관광과	26,527,139	4.15 %	26,114,193	4.07 %	412,946	1.58 %
문화예술과	13,515,644	2.11 %	13,391,776	2.09 %	123,868	0.92 %
주민복지과	22,389,555	3.50 %	22,721,797	3.54 %	△332,242	△1.46 %
가족지원과	90,458,516	14.14 %	92,430,111	14.40 %	△1,971,595	△2.13 %
환경과	31,983,113	5.00 %	32,722,020	5.10 %	△738,907	△2.26 %
농정과	60,930,655	9.52 %	60,239,346	9.39 %	691,309	1.15 %
산림축산과	23,785,903	3.72 %	23,555,611	3.67 %	230,292	0.98 %
기업경제과	11,781,054	1.84 %	11,540,862	1.80 %	240,192	2.08 %
도시계획과	46,305,489	7.24 %	45,079,881	7.02 %	1,225,608	2.72 %
새마을교통과	15,258,951	2.38 %	15,381,960	2.40 %	△123,009	△0.80 %
허가과	1,026,672	0.16 %	941,840	0.15 %	84,832	9.01 %
안전과	21,777,802	3.40 %	21,473,361	3.35 %	304,441	1.42 %
건설과	56,248,719	8.79 %	54,862,719	8.55 %	1,386,000	2.53 %
직속기관	**22,793,001**	**3.56 %**	**22,249,350**	**3.47 %**	**543,651**	**2.44 %**
보건소	14,243,651	2.23 %	13,700,069	2.13 %	543,582	3.97 %
농업기술센터	8,549,350	1.34 %	8,549,281	1.33 %	69	0.00 %
외 청	**1,360,984**	**0.21 %**	**1,360,984**	**0.21 %**	**0**	**0.00 %**
의회사무과	1,360,984	0.21 %	1,360,984	0.21 %	0	0.00 %
사업소	**83,027,982**	**12.98 %**	**83,852,838**	**13.07 %**	**△824,856**	**△0.98 %**
상하수도사업소	49,645,923	7.76 %	50,624,923	7.89 %	△979,000	△1.93 %
체육시설사업소	19,722,011	3.08 %	19,568,302	3.05 %	153,709	0.79 %
자원순환사업소	13,660,048	2.14 %	13,659,613	2.13 %	435	0.00 %
읍면계	**18,979,578**	**2.97 %**	**19,007,615**	**2.96 %**	**△28,037**	**△0.15 %**
성주읍	2,788,911	0.44 %	2,751,411	0.43 %	37,500	1.36 %
선남면	2,141,486	0.33 %	2,141,486	0.33 %	0	0.00 %
용암면	1,914,014	0.30 %	1,919,014	0.30 %	△5,000	△0.26 %
수륜면	1,962,218	0.31 %	1,962,218	0.31 %	0	0.00 %
가천면	1,528,076	0.24 %	1,576,076	0.25 %	△48,000	△3.05 %
금수면	1,583,134	0.25 %	1,582,082	0.25 %	1,052	0.07 %
대가면	1,636,132	0.26 %	1,636,132	0.25 %	0	0.00 %
벽진면	1,740,775	0.27 %	1,743,675	0.27 %	△2,900	△0.17 %
초전면	1,887,346	0.29 %	1,887,346	0.29 %	0	0.00 %
월항면	1,797,486	0.28 %	1,808,175	0.28 %	△10,689	△0.59 %

마.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일반+특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39,800,000	100.00%	641,790,000	100.00%	△1,990,000	△0.31%
인건비	69,470,237	10.86%	69,450,082	10.82%	20,155	0.03%
물건비	38,727,127	6.05%	38,670,723	6.03%	56,404	0.15%
경상이전	216,551,402	33.85%	219,856,572	34.26%	△3,305,170	△1.50%
자본지출	293,260,511	45.84%	291,390,437	45.40%	1,870,074	0.64%
내부거래	7,922,498	1.24%	7,912,498	1.23%	10,000	0.13%
예비비및기타	13,868,225	2.17%	14,509,688	2.26%	△641,463	△4.42%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성주군옥외광고발전기금	합 계	49,000	52,000	△3,000	합 계	49,000	52,000	△3,000
	전 입 금	10,000	10,000	0	비융자성사업비	18,000	25,000	△7,000
	예치금회수	31,990	41,990	△10,000	예 치 금	30,500	27,000	3,500
	이자수입	10	10	0	기타지출	500	0	500
	기타수입	7,000	0	7,000				
성주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합 계	16,310,000	16,251,000	59,000	합 계	16,310,000	16,251,000	59,000
	예치금회수	15,996,985	15,900,000	96,985	예 탁 금	7,500,000	0	7,500,000
	이자수입	313,015	351,000	△37,985	예 치 금	8,810,000	16,251,000	△7,441,000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기 금 명	202년도 말 현재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수입ⓑ	지출ⓒ		
성주군옥외광고 발전기금	31,990	17,010	18,500	30,500	△1,490
성주군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5,996,985	313,015	0	16,310,000	313,015

▢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 예산안 규모는 19억 3천 4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억원, 특별회계 12억 9천만원입니다.

▢ **일반회계의 세입**은

◇ 지방세수입 1억 1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세외수입 3억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지방교부세는

- 보통교부세 77억 1천 3백만원 감액하고,

-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정교부금은

- 일반조정교부금 2억 5천만원과

- 특별조정교부금 6억 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 국·도비 보조금 24억 9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은

◇ 국·도비 보조사업 12억 4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특별교부세 사업 1억원

[특별교부세 세입 13억원, 재원(군비)대체 12억원]

◇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세입 6.5억원, 군비매칭비 3.5억원]

◇ 국·도비 반환금 33억 9천 6백만원

◇ 경상경비 등 자체사업 1억 5천 1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41억 2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5억원
- 기초연금 지원 29억 7천 2백만원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억원
- 전기자동차 보급 5억 8천 4백만원
- 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 2천 4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억 7천 8백만원
-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3억 9천만원

-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공사비 5억 1천 9백만원을
 [수륜보건지소, 도흥보건진료소]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 도시재생(2단계) 군비추가분 10억원
- 동락 재해위험지구 정비 2억 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경상경비 등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5억 8천 5백만원
-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8천 6백만원
- 기타 사업비 증감으로 인해 1억 5천 1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규모**는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천 7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1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 수질개선 특별회계 2억 4천 9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천만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억 9천 9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 3백만원 감액하고, 성주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천 9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5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 검토의견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6,417억 9천만원에서 일반회계 7억원, 특별회계 12억 9천만원이 감액된 6,398억원입니다.

○ 금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세입세출 예산 정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 재정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4년 회계연도 중 확보된 소중한 재원 19억원 정도가 불용 또는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향후에는 사업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 국·도비 보조금 반납의 경우에는 사업 지침 및 보조 비율 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 금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 및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2024년 명시이월 승인 요구액이

- 일반회계 91건 662억 5천 5백만원
- 특별회계 4건 9억 7천 6백만원 등

총 95건에 672억 3천 1백만원으로서,

○ 2023년 말 명시이월액 631억 3백만원보다 41억 2천 7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용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신중함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 목적과 기본 방향을 준수하여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

□ 총 괄

1.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 : 수정 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나머지는 원안과 같음.

(단위:천원)

회 계 별	단체장 제출 예산안			수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제3회 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증 액	감 액		
합 계	639,800,000	641,790,000	△1,990,000	126,000	△126,000	639,800,000	
일 반 회 계	599,100,000	599,800,000	△700,000	126,000 (예비비)	△126,000	599,100,000	
특 별 회 계	40,700,000	41,990,000	△1,290,000			△1,290,000	

□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 : 수정 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나머지는 원안과 같음.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제3회 추 경 예산액	수정내역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부기명)		증 액	감 액	
계	1건			126,000 (예비비)	△126,000	
산림축산과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	402-02 ○깨끗한축산환경지원(고속건조발효기)(자180,000)	153,000	126,000	△126,000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예정 국가 방문)

성주군의회

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예정 국가를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에 필요한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 근로자 이탈 문제 등 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2. 출장국가 : 베트남, 캄보디아

3. 출장기간 : 2024. 11. 3. ~ 11. 10. (6박 8일)

4. 연수인원 : 12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성주군의회	의 장	도희재
	부의장	이화숙
	의 원	구교강
	의 원	김경호
	의 원	김성우
	의 원	김종식
	의 원	여노연
	의 원	장익봉
	과 장	조익현
	팀 장	도영찬
	주무관	함석균
	주무관	김양수

5. 연수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11월 3일 (일요일)	부산 김해	베트남 하노이	-	○ 출국 및 베트남 하노이 도착
11월 4일 (월요일)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타이빈성	타이빈성 시청 과학기술협회	○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관련 협의 - 실무자 면담 - 현지 실태 파악 ○ 농장 견학
11월 5일 (화요일)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박깐성 하롱베이	박깐성 시청	○ 박깐성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관련 협의 - 실무자 면담 - 현지 실태 파악
11월 6일 (수요일)	베트남 하롱베이	베트남 하롱베이	지역 농가	○ 농장 견학 - 베트남 농업 현장 실태 파악
11월 7일 (목요일)	베트남 하롱베이 하노이	캄보디아 씨엠립	-	○ 출국 및 캄보디아 씨엠립 도착
11월 8일 (금요일)	캄보디아 씨엠립	캄보디아 씨엠립	캄보디아 포이펫시 시장 현장 미팅	○ 관계자 면담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관련 협의 - 실무자 면담 - 현지 실태 파악
11월 9일 (토요일)	캄보디아 씨엠립	베트남 하노이	-	○ 농장 견학 - 캄보디아 농업 현장 실태 파악 ○ 출국 및 하노이 도착
11월 10일 (일요일)	베트남 하노이	부산 김해	-	○ 출국 및 부산 도착

II 방문 국가 현황

1 베트남



○ 공식명칭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 면 적 : 331,212㎢
○ 수 도 : 하노이
○ 공 용 어 : 베트남어
○ 종 교 : 무종교(73.7%), 불교(14.9%), 기독교(8.5%), 기타(2.9%)
○ 독 립 일 : 1945년 9월 2일(프랑스로부터 독립)
○ 인 구 : 약 1억 98만명(2023년 기준)
○ 1인당 GDP : 14,342 $ (2024년 기준)

2 캄보디아



○ 공식명칭 : 캄보디아 왕국
○ 면 적 : 181,035㎢
○ 수 도 : 프놈펜
○ 공 용 어 : 크메르어
○ 종 교 : 불교(97%), 이슬람교(2%), 기독교(0.3%), 기타(0.5%)
○ 독 립 일 : 1953년 11월 9일(프랑스로부터 독립)
○ 인 구 : 1,763만 명(2024년 기준)
○ 1인당 GDP : 6,541 $ (2024년 기준)

Ⅲ 세부 출장 내용

1 베트남 타이빈성 방문

【 타이빈성 주요 현황 】

❍ 위 치: 베트남 북부에 위치, 수도 하노이와 110km 거리
❍ 인 구: 180만여 명
❍ 특 징
- 베트남 북부의 해안도시로 경제특구로 지정되며 신흥 산업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비옥한 토지와 정리된 관개시설,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베트남 북부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유명함

❍ 방문개요
- 일 자 : 2024. 11. 4.(월)
- 장 소 : 베트남 타이빈성 시청 회의실
- 참 석
▶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장 외 의원 7명, 의회사무과 과장 외 3명
▶ (타이빈성) 응웬찌엔탕 노동보훈사회부 부국장, 땅꾸옥쓰 노동고용실장, 팜타잉화 외무실 실장, 레반꼰 고용센터 원장 외 8명 등
- 내 용 :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현지 실태 파악 및 논의

❍ 주요 미팅 내용

타이빈성	2018년 7월 한국 영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함 2019년 44명 영주시, 2020 ~ 2022년 코로나로 중단 2023년 37명 인천시, 2024년 65명 대전시, 35명 홍천군(전원 남자 근로자) 보냈으며, 출국 전 한국어 교육 실시함 최근 2024년 9월 전라남도 고흥군이랑 mou 체결하여 10명 출국 하였으며, 11월 중 19명 추가로 고흥군으로 보낼 예정

성주군 의회	성주군 현황 설명 인구 4만 2천명 농업도시로 주 작목은 참외이며 농가 평균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근로자 부족으로 계절근로자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2021년 126명, 2022년 350명, 2024년 850명, 2025년 농가 수요조사 1,500명으로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우리군은 필리핀 4개 도시, 라오스 2개 도시와 mou를 맺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다양한 나라 및 도시와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사전 답사차 베트남을 방문 하였음 참외 비닐하우스 온도가 높아 더운 지방 사람이 유리 하며, 2월~7월 생산이 집중 되는 만큼 그 시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함
성주군 의회	타이빈성 계절근로자 인력들의 이탈률과 이탈자와의 연락이 가능한가?
타이빈성	인천, 고흥, 영주 10% 이하, 홍천은 0%이며, 이탈자와 연락은 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이탈방지 대책으로 가족들에게 보증서 또는 서약서 형식 으로 사전에 받고 있음
성주군 의회	타이빈성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민자 여성이 많은가?
타이빈성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 않고 있으나, 소수로 알고 있음
성주군 의회	성주군에서는 결혼이민자 초청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도 관심이 많음
성주군 의회	베트남은 유교문화권으로 한국과 비슷한 면이 많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업진행이 매끄러울 것으로 예상됨
성주군 의회	타이빈성에서는 이탈방지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 한국에 같이 갈 수 있는가?
타이빈성	이탈방지 대책으로 2가지를 추진중에 있음 서약서 형식으로 가족들과 체결하고 있고, 요청시 관계공무원이 한국으로 같이 감. 홍천군과 사업 진행 시 관계공무원이 같이 한국에 갔었음

❍ 방문사진





❑ 타이빈성 농업 현장 방문

❍ 방문개요

- 일 자 : 2024. 11. 4.(월)
- 장 소 : 베트남 타이빈성 채소 농장
- 참 석

▶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장 외 의원 7명, 의회사무과 과장 외 3명

▶ (타이빈성) 응웬찌엔탕 노동보훈사회부 부국장, 땅꾸옥쓰 노동고용실장, 팜타잉화 외무실 실장, 레반꼰 고용센터 원장 외 8명 등

- 내 용 : 영농 현장 방문 및 실태 파악

❍ 주요 미팅 내용

영농 책임자	여기 규모는 약 12만평 정도 되며, 19개 종류의 채소, 과일 등을 재배중에 있음. 방울토마토, 오이, 상추, 무 등 다양함
성주군 의회	이 농장들은 가족 중심의 농장 운영 인가?
영농 책임자	가족 중심의 운영임
성주군 의회	소유자는 여러사람들 인가? 이 지역에서 유독 규모를 크게 하는 이유는?
영농	소유자는 여러명이며, 토질이 워낙 좋아 대규모로 하고 있음

책임자	
성주군 의회	유독 상추 재배 면적이 커 보이고, 쌀보다 야채가 수익이 더 좋은가?
영농 책임자	상추를 많이 재배 하고 있으며, 쌀보다 야채가 14~18배 수익이 더 좋음. 유기농으로 생산하면 더 많은 수익이 남
성주군 의회	경지정리나 수로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정리를 해준것인가?
영농 책임자	베트남 정부에서 회사와 합작하여 해준것임

❍ 방문사진





❑ 과학기술협회 임원 미팅

❍ 방문개요

- 일 자 : 2024. 11. 4.(월)
- 장 소 : 베트남 현지 미팅룸 및 식당
- 참 석

▶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장 외 의원 7명, 의회사무과 과장 외 3명

▶ (과학기술협회) 쭝 장군, 임직원 등 총 15명

- 내 용 : 계절근로자 인력 관련 협의

❍ 방문사진





2 베트남 박깐성 방문

【 박깐성 주요 현황 】

❍ 위 치: 베트남 동북부에 위치, 수도 하노이와 160km 거리
❍ 인 구: 31만여 명
❍ 특 징
- 베트남 북동부 중부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숲 지역이 95% 이상을 차지 하고 있음
- 광물자원과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산, 강, 호수 등 관광 자원도 많아 관광업이 유망산업에 속함
- 전체 인구 중 83%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음

❍ 방문개요

- 일 자 : 2024. 11. 5.(화)
- 장 소 : 베트남 박깐성 회의실
- 참 석

▶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장 외 의원 7명, 의회사무과 과장 외 3명

▶ (박 깐 성) 박깐성 응웬당빙 인민위원장, 토티히엔 노동사회국장, 호앙반리안 계획투자국장 등 총 15명

- 내 용 :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현지 실태 파악 및 논의

❍ 주요 미팅 내용

박깐성	박깐성의 대부분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외 노동자들도 많으나 가정 내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장기 해외 근로보다 단기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주민들이 선호함 현재 계절근로자 노동자는 250명으로, 매년 20~30명 정도 출국하고 있음 국가 정책에 따라 해외근로자에게 외국어 교육,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하게 하고 있음. 한국으로 계절근로자 출국 시 한국어 교육 지원도 가능함 계절근로자 관련하여 제안사항이 있음 1. 근로시간 60시간, 특근 급여 지원 2. 작업자 안전, 인권 보호 3. 고용주가 비행기표 금액 지원 가능 여부 4. 근무 기간 동안 보험 가입 철저 5. 이탈방지 대책 필요(박깐성도 자체 대책을 세우겠음) 6. 근로자 가족과 연락 유지 방안 필요
성주군 의회	성주군 현황 설명 현재 필리핀, 라오스와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한국과 문화가 달라 이탈자 발생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베트남은 한국과 문화가 비슷해 사업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탈방지에 대한 부분은 성주군도 하겠지만 현지에서 대책울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대한민국은 법률로 근로자를 보고하고 있고, 계절근로자 채용 시 고용주 숙소를 사전에 엄격히 확인하고 있음 또한 고용주 근로자에 대한 위반 사항 발생시 제재와 함께 계절근로자 사업에서 바로 배제 시킴
성주군 의회	제안사항 중 고용주에게 비행기 표를 부담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박깐성	비행기표 지원 부분은 지방노동국에서 베트남→한국으로 가는 것은 노동자 부담, 한국→베트남으로 돌아오는 것은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한 적은 없었음 비행기 표 지원 부분은 계속적으로 소통이 필요함
박깐성	계절근로자 노동시간은?
성주군 의회	근로시간은 8시간+특근시간 가능, 지금 성주에서는 고용주와 협의하여 특근수당도 많이 받고있음
성주군 의회	박깐성에서 온 공문으로 인해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음 대한민국은 농업인구가 부족하여 계절근로자가 절실히 필요함 임금문제, 보험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하면 고용주와 협의하여 추가 임금도 가능함이번 기회로 양 도시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성주군 의회	성주에서는 부부 계절근로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가 같이 올수 있는가?
박깐성	충분히 가능하며 고용 과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박깐성	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최대 몇 번 연장이 가능하며, 근로자 이탈 방지 대책이 있는가?
성주군 의회	보통 5개월 기간 근무 후 3개월 연장 하며 최대 8개월 근무가 가능 고용주 요구시 내년도 재근로도 가능함 또한 이탈방지 대책으로 고용주가 핸드폰을 통해 가족과 연락을 지원하고, 성주에 있는 현지인을 통역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전반적인 생활을 도와주고 있음

❍ 방문사진





❑ 하롱베이 현지 농장 및 시장 방문

❍ 방문개요

- 일 자 : 2024. 11. 5.(화)
- 장 소 : 베트남 하롱베이 농장(파인애플), 시장 방문
- 참 석

▶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장 외 의원 7명, 의회사무과 과장 외 3명

- 내 용

· 대규모 농장을 가족들이 함께 운영중에 있었으며, 당도가 높아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함

· 현지 시장에서는 과일, 채소류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육류도 판매를 하였으나, 고기의 지방이 적고 냉장 보관 시설이 미흡하여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음

❍ 방문사진





3 캄보디아 포이펫시 관계자 미팅

【 포이펫 주요 현황 】

❍ 위 치: 캄보디아 북서쪽 위치, 수도 프놈펜 342km 거리
❍ 인 구: 30만여 명
❍ 특 징
- 캄보디아-태국 국경지대에 위치하여 카지노 관광 사업으로 유명함
- 자동차, 의류 공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

❍ 방문개요
- 일 자 : 2024. 11. 8.(금)
- 장 소 :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 호텔 회의실
- 참 석
▶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장 외 의원 7명, 의회사무과 과장 외 3명
▶ (포이펫시) 킷홀 포이펫시장, 츠한촘로응 시의회 의장, 님포응 부시장, 페스리야삭 부시장, 음부톤 행정국장 등 8명
- 내 용 :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현지 실태 파악 및 논의

❍ 주요 미팅 내용

포이펫시	포이펫시는 인구는 약 30만명 정도 되며, 카지노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음. 중국, 태국 경계와 인접하여 캄보디아 내에서 가장 활발이 발전하고 있으며 자동차공장, 의류 공장도 많음 농업인구는 전체 약 17% 정도이며, 농업 인력이 풍부함 현재 서울시 종로구청과 mou를 맺고 교류 협력중임 한국을 가고싶어 하는 근로자들이 많음
성주군 의회	성주군 현황 설명 보험, 임금 등 국내인과 동일하게 지원해주고 있음 근로자가 일을 잘하면 5개월 근무에 3개월 더 연장근무 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에 또 근로를 할 수 있음 근로자 숙소 또한 엄격히 관리하여 문제가 없으며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고용주가 계절근로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포이펫시	다른 지역 사람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가?
성주군 의회	최소한 주민등록 주소가 그 지역에 되어 있어야 하며, 포이펫시 같은 경우는 카지노 종사자들이 많고 타 지역 사람들이 포이펫시에서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탈률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됨. 첫해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이탈률이 높아 계절근로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음 추후 사업 진행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방문사진





4 총 평

베트남, 캄보디아의 각 도시들은 현재 한국의 도시들과 MOU를 맺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진행중에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다양한 한국의 도시들과 계절근로자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함

하지만 방문한 각 도시들은 계절근로자들의 노동여건, 급여, 보험, 숙소, 이탈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 등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내용 들이 있었음

현재 성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약 1,500여명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문제로는 브로커 개입, 근로자 이탈, 고용주 폭언, 폭행 등 인권 침해, 의사소통 어려움 등이 있음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의 성패는 근로자 이탈 여부에 있으므로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교한 장치가 필요함(ex. 서약서, 여권 회수, 임금통장 관리)

또한, 작물별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5개월 이상의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으므로 체류기간 확대 등 체류기간 변동에 대한 유연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최대 8개월 → 10개월)

이외에도 우수 근로자 계속 선발 보장 등 성실근로자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부실한 숙소 방지를 위한 기숙사 건립, 고용주 폭언, 폭행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강력한 법적 조치가 마련 되어야 함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므로, 출국 전 한국어 교육, 근로 중에도 주기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도희재 의장

- 성주군의 참외산업을 한단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부족한 영농인력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성주군은 22년 126명을 시작으로 23년 530여명, 24년 850여명의 계절근로자를 22년 필리핀 루바오시를 시작으로 MOU를 맺기 시작하여 현재는 필리핀 4개도시와 라오스 1개 도시로 확대되어 운영중에 있음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25년도의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는 700여농가, 1,500여명 으로 확대 됨

 하지만 참외가 극성수기 일 때 이탈없이 성실히 근무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성주군의회는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도시로의 인력 공급 방향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베트남 타이빈성, 박깐성, 그리고 베트남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거치고, 캄보디아의 포이펫 시의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들 비롯한 관계자 분들과의 면담을 통해 동남아 여러나라의 계절근로자 인력 공급 여건과 각 나라 및 도시의 영농 인력 현황 분석을 위해 이번 출장을 계획하게 되었음
 당장 지자체 간의 MOU를 전제로 면담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각 나라의 지자체에서 준비중인 계절근로인력 공급 준비와 사업의 이해도,

영농인력의 숙련도, 해당 지자체의 이탈방지 대책 준비 등을 엿보며 향후 어떤 도시하고 MOU 추진 하더라도 우리가 검토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준비를 시켜야 할 항목들에 대한 목록 등을 만드는데 중요한 과제들을 발굴 하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음

❍ 이화숙 부의장

- 베트남, 캄보디아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각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음. 각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으며, 특히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강조 하였음

또한 두 나라는 따뜻한 기후이기 때문에 참외 비닐하우스 내 높은 온도에서 일할 때 굉장히 큰 이점이 될 것으로 생각함

현재 우리 군은 필리핀, 라오스와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점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이 많이 필요한 만큼 신속히 베트남, 캄보디아와도 사업 진행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구교강 의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변화 및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 인력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게 되었음

실제로 방문한 베트남, 캄보디아의 도시들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미팅을 통해 한국으로 계절근로자들을 송출하고 싶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음

많은 인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탈률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여권 회수, 임금통장 관리 등을 통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고용주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노동자들은 처음 참외를 접해보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주고, 정당한 임금, 사고를 대비한 보험, 안정적인 숙소, 가족적인 분위기 등을 통해 일하고 싶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함

❍ 김경호 의원

- 성공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위해 다양한 나라의 도시를방문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공무국외 출장을 준비하게 되었음

우리가 방문한 베트남 타이빈성, 박깐성, 캄보디아 포이펫시 관계자들은 한국의 여러 도시들과 mou를 맺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진행중에 있었음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며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근로자 이탈, 인권 침해 등이 있었음.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은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고, 우리군 또한 현재 필리핀, 라오스와 계절근로자 사업을 진행하며 근로자 이탈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아닌 양 도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인력을 송출하는 쪽에서는 근로자 이탈 시 가족들에게도 책임을 무는 서약서 작성, 근로자를 받는 쪽에서는 적정한 임금, 숙소, 보험, 임금 통장 관리 등이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함

❍ 김성우 의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수급 방식의 적절성, 관리능력(전년도 이탈률, 운영실태), 인권 보호 계획 등 다양한 기준이 필요함

성주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며,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이들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가 우려된다고 함

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 지자체는 이탈 방지를 위해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성주군에서는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계절근로자 인력은 충분히 공급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를 위해 세부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함

❍ 김종식 의원

- 베트남, 캄보디아는 노동력이 대단히 높은 젊은 국가이며,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박깐성 고위공직자들의 시도와 투자는 매우 감명 깊었음.

또한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이탈에 대한 대비책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 국가의 인력통제력을 고려한다면 추후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과 E9비자 외국인 고용 등으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됨

❍ 여노연 의원

- 계절근로자의 공급은 충분히 성주군의 수요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인력들을 선발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됨. 다양한 국가와 도시를 발굴하여 고급 인재들을 선발하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성주의 참외 산업에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됨

특히 이번에 방문한 베트남과 캄보디아 도시 관계자 들을 만나 현지의 사정과 환경을 충분히 파악 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음

❍ 장익봉 의원

- 베트남, 캄보디아라는 국가를 방문하면서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었음. 관계자를 통해 이 두 국가는 일할 능력이 있는 젊은 인력들은 풍부하지만, 이 인력들을 채용할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주의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음

특히 현지 근로자의 인건비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높은 인건비와 고용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인력들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이를 위해 각 국이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계절근로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참고자료(관련 공문)

❍ 베트남 현지 기관 방문 섭외 요청(성주군의회)

성 주 군 의 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진행에 따른 베트남 현지 기관방문 섭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회사무과-4474(2024.09.26.)호와 관련입니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하여 계절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군 현황과 필요사항을 전달하여 사업 진행 간 양도시간 상호신뢰 증진을 위하여 베트남 현지 방문 예정이오니, 외국인 근로자 관련 공공기관 방문 및 관계자와의 면담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출장개요
가. 기 간 : 2024. 11. 03.(일) ~ 2024. 11.07.(목) (5일간)
나. 장 소 : 하노이, 하이퐁, 하롱베이 일원
다. 인 원 : 12명(성주군의회 의원8, 의회사무과 직원4)
라. 목 적 :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도입 후보국 현장방문
마. 협조사항 : 출장 기관 중 **계절근로자 관련 공공기관방문** 장소 섭외
계절근로자 및 담당자 면담 요청

붙임 방문일정 1부(별첨). 끝.

성 주 군 의 회 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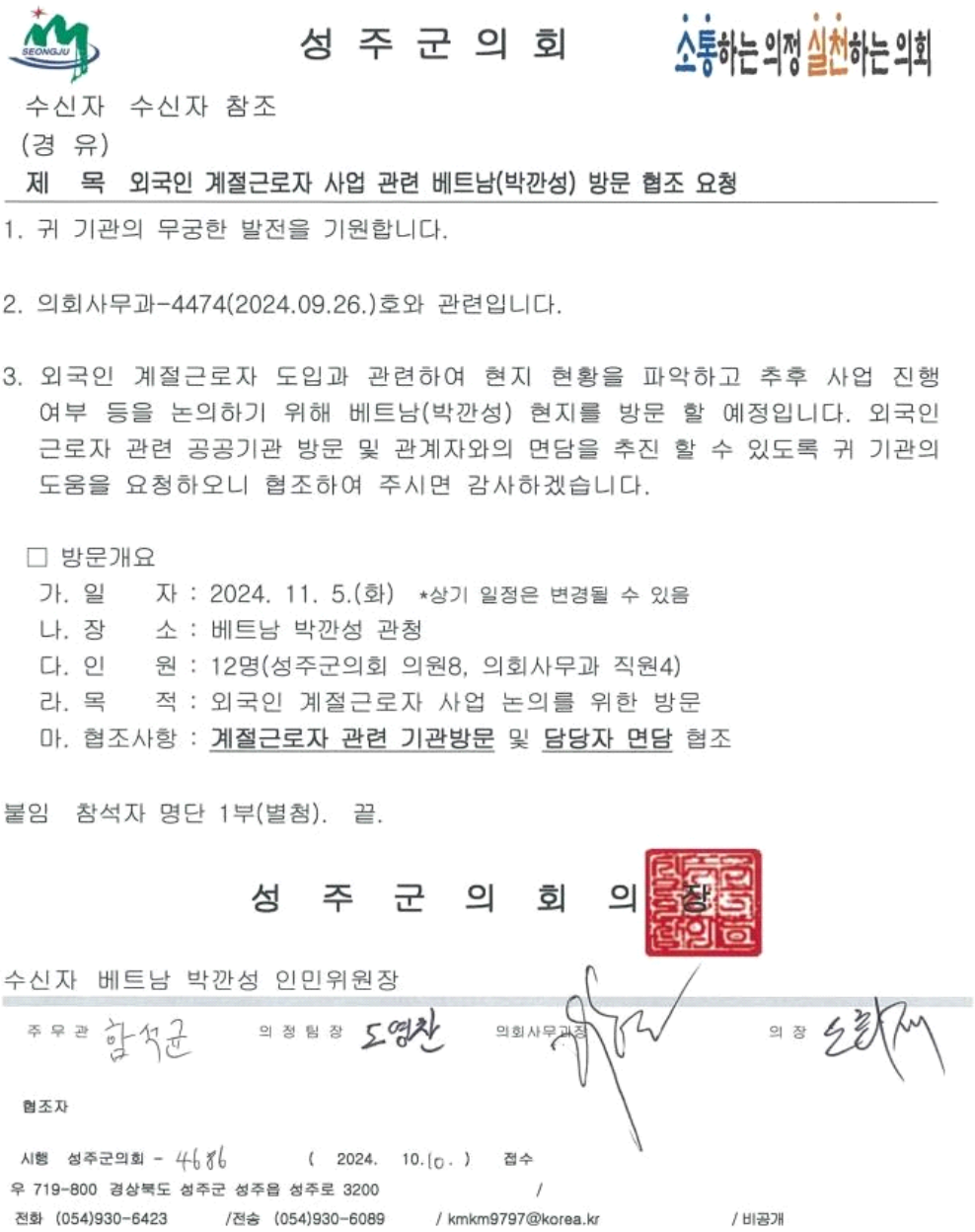
수신자 한국다문화재단 중앙회

주무관 함석균 의정팀장 도영찬 의회사무과장 의장

협조자

시행 성주군의회 - 4544 (2024. 9.30.) 접수
우 719-800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
전화 (054)930-6423 /전송 (054)930-6089 / kmkm9797@korea.kr / 비공개

❍ 베트남 박깐성 방문 협조 요청(성주군의회)



성 주 군 의 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관련 베트남(박깐성) 방문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회사무과-4474(2024.09.26.)호와 관련입니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하여 현지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베트남(박깐성) 현지를 방문 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공공기관 방문 및 관계자와의 면담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방문개요
가. 일 자 : 2024. 11. 5.(화)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 베트남 박깐성 관청
다. 인 원 : 12명(성주군의회 의원8, 의회사무과 직원4)
라. 목 적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논의를 위한 방문
마. 협조사항 : 계절근로자 관련 기관방문 및 담당자 면담 협조

붙임 참석자 명단 1부(별첨). 끝.

성 주 군 의 회 의 장

수신자 베트남 박깐성 인민위원장

주무관 함정균 의정팀장 도영찬 의회사무과장 의장

협조자

시행 성주군의회 - 4686 (2024. 10.[0.) 접수
우 719-800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
전화 (054)930-6423 /전송 (054)930-6089 / kmkm9797@korea.kr / 비공개

❍ 베트남 현지 기관 섭외(한국다문화재단)

사랑과 봉사로 다문화가족과 함께 행복!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다문화재단

Korea Multicultural Volunteer Association

수 신 : 성주군의회 의장님 귀하
날 짜 : 2024년 10월 14일
경 유 : 성주군의회 사무과 담당
제 목 :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진행에 따른 베트남 현지 기관방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관련 베트남 현지 기관 방문

성주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2024년 11월 3일 ~ 7일 동안 베트남 현지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하노이와 인근 지방성 관계자와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세부 일정 및 주요 내용

- 일정: 2024년 11월 3일 ~ 7일
- 방문 지역: 하노이 및 호아빈성
- 방문 목적 및 주요 활동

- 호아빈성 지방성관계자와의 협력 미팅
- 호아빈성 농업 시찰: 지역 농업 현황 파악 및 계절근로자 파견 가능성 논의
- 베트남 과학기술협회: 농업 및 인력 교류 방안 논의
- 공식 만찬: 현지 기관과의 친목 도모 및 협력 강화

4. 기대 효과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지방성과의 유기적 협력을 구축하고 성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농업 인력 문제 해결 및 향후 다양한 인력 교류 가능성도 확대될 것입니다.

5. 기타

방문과 관련된 추가적인 보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후 성주군의회에 신속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다문화재단

담 당: 팀 장 윤 시영 (010-2625-8748) 이 사 장 : 권 재행
부회장 윤 종근 (010-8181-5389)
시 행: 한국다문화재단 중앙회
접 수 일: 2024. 10.14.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50-3 성산빌딩 6
전 화: (053)710-3877 팩스: (070)4855-3877 이메일: kvecc@naver.com

❍ 베트남 박깐성 회의 개최 관련 자료

초대장

수신분:

- 박깐 성 인민위원회 Nguyen Dang Binh 위원장님;
- 박깐 성 계획투자국, 노동보훈사회국, 상공국, 재정국, 교육훈련국, 사법국, 내무국; 인민위원회 사무실 임원;
- 박깐 성 공안 임원;
- 박깐 성 사회정책은행 임원;
- 박깐 전문대학교 집행부 대표;
- 박깐 성의 시, 현 인민 위원회 임원.

인민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각 기관 (상기 수신분) 임원분들께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도희재 의원님의 지도 하에 출장단과의 회의에 참석 요청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석 대상:** 상기 수신분.
2. **회의 시간:** 2024년 11월 5일 (화) 14시 30분.
3. **회의 장소:** 박깐 성 인민위원회 본부 1층 세미나실.
4. **회의 내용:** 계절근로자 파견 및 투자에 대해 논의.
5. **인민위원회의 지시 사항:**

5.1. 계획투자국: 박깐 성의 경제-사회 한황과 협력 요청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여 2024/11/04일 9시전까지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5.2. 노동보훈사회국: 박깐 성의 노동 현황, 현재 대한민국에 계절근로자 파견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여2024/11/04일 9시전까지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5.3. 박깐 성 공안: 성주군 출장단 방문 기간에 보안을 확보하도록 한다.

5.4. 인민위원회 사무실: 회의실과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관련 기관 임원분들께서 회의에 참석 요청드립니다./.

수신처:
- 상기 수신인;
- 박깐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위원부장;
- 인민위원회 사무실 임원;
- 박깐 성 일보, 박깐 성 방송국, 전자정보포털 (뉴스 전파 기사 파견);
- 박깐 성 공안 (PA 01, PA 03);
- 총무팀 (지원);
- 문서 보관: 문서과 (H)

인민위원회 위원장
인민위원회 사무실 실장
인민위원회 사무실 부실장

Phạm Lê Nguyên